

의안번호	제867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 · 운영에관한조례
폐지조례안

발의자	김정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(김정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: 김정일·이정범·유상용
김성대·박병천·박봉순
박진희 의원

1. 제안이유

- 「과학교육진흥법」 일부개정(2010.3.17.)으로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고, 「과학교육진흥법」을 전부개정한(2017.10.24.) 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」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음
- 이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본 조례 존치 근거 및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: 해당사항 없음

다. 관계부서 협의: 창의특수교육과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과학교육진흥법

[시행 2008. 2. 29.] [법률 제8852호, 2008. 2. 29., 타법개정]

제5조(과학교육심의회) ① 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과학교육심의회(이하 “중앙심의회”라 한다)를, 그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(이하 “지방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 중앙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지방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시행 2010. 6. 18.] [법률 제10083호, 2010. 3. 17., 일부개정]

제5조(정의) 삭제 <2010. 3. 17.>

□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

[시행 2018. 4. 25.] [법률 제14903호, 2017. 10. 24., 전부개정]

제7조(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 ①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융합위원회(이하 “융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 2.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·융합에 관한 사항
 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-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